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공포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한설비건설협회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심사제도가 법제화 되었으며, 기계설비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복구·개량·보수·보강을 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 1.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제33조)

[현행] 의무하도급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개정] 의무하도급 대상은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의무하도급대상공사를 30억원 이상공사로 축소 계획이었으나 이를 수정 조정

## 2. 하도급심사제도 법제화(제34조)

[신설]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수주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3. 공제조합 운영위원 개정(제51조)

[현행] 12명 : 조합원 7명, 재경부 1명, 건교부 1명, 협회 회장, 이사장,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운영위원회가 추천 건교부장관이 위촉 1명

[개정] 15명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

은 협회의 회장

5.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기계설비공사 업역확대 (별표 1)**

[개정]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복구·개량·보수·보강을 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5. 전문업종의 통합 (별표 1)**

- 가스시설시공업 1~3종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시공업 4종 → 가스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5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별첨 :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 기준

**6.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별표 4)**

[개정]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7.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별표 5)**

[현행] 50억원 이상공사의 경우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중 학·경력기술자는 시공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자만 배치가능

[개정] 50억원 이상공사의 경우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중 학·경력기술자는 시공관리자의 경력자도 배치가능

[현행] 인정기능공의 경우 원도급공사는 1억원 미만, 하도급공사는 3억원미만의 현장에만 배치가능

[개정] 인정기능공도 5억원미만의 원도급 또는 하도급공사의 현장에 배치가능

**1.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 및 하도급심사제도 법제화**

<p>제33조(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p> <p>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p> <p>②·③ (생략)</p> <p>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p>	<p>제33조(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 등)</p> <p>① . . . . . 20억원 이상</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p>
---	--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0억원 이상(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1. 기술사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00억원 이상	1. 기술사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0억원 이상	1. 기술사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u>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u>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u>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u>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u>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u>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u>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u>

3.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제7조관련)

<p>27.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li> <li>•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li> <li>•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 집단공급시설</li> <li>• 저장소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li> <li>•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li> <li>•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li> <li>• 변경공사</li> </ul>
<p>가스시설시공업(제2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종의 업무내용</li> <li>•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li> <li>•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li> <li>•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li> <li>•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li> <li>• 변경공사</li> <li>•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li> </ul>
<p>가스시설시공업(제3종)</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li> <li>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li> </ol>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관련)

<p>가스시설시공업 제1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li> <li>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용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가스·특수 용접기능사 또는 공업·건축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li> </ol>	<p>법인 및 개인</p>	<p>1억원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밀시험설비</li> <li>2. 내압시험설비</li> <li>3. 자기압력기록계</li> <li>4. 가스누출검지기</li> <li>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li> <li>6. 볼트 및 암페어메타</li> <li>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li> <li>8. 각종 압력계</li> <li>9. 표준이 되는 온도계</li> </ol>
<p>가스시설시공업 제2종</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밀시험설비</li> <li>2. 자기압력기록계</li> </ol>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p>가스시설시공업 제3종</p>	<p>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p> <p>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p> <p>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p> <p>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p>		<p>3. 가스누출검지기</p>
--------------------	--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공사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1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2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3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4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5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건축공사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1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1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1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2종)</li> <li>• 가스시설시공업(제3종)</li> </ul>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 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